

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6. 21.(목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관련 위치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- (2012-34-124~126)

-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등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사업자별 위반사항

-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 : 개인위치정보 제공시,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(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위반)
- SK텔레콤(주), (주)KT : 개인위치정보의 동의없이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(위치정보법 제21조 위반)

② 시정조치 내용 : 위치정보 제공동의 체크 시스템 구축·운영,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조회사실을 SMS통지 등(3사 공통)

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34-127)

-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28차 위원회(12.5.21) 보고 후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
-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및 문구 정리(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, 제50조의2, 별표 8)

·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금액, 징수절차 및 행정처분 기록 등을 규정

- 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, 등록기준 신고 접수,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(안 제53조)

·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 등 단순 업무를 민간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
② 개선·보완 사항

- 정보통신공사의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(안 제4조제1항제2호)

·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공사의 판단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

※ 시행령 개정안 보고(입법예고)안과 변경 내용 없음

○ 향후일정
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'12. 6월 ~ 7월

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: '12. 7월

7] 보고사항

가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총칙 (안 제1조~제5조)

- (정의) 클라우드컴퓨팅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 (안 제2조)

- 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(안 제5조)

②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(안 제6조~제13조)

- (시책마련)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·시행하도록 규정 (안 제6조)

- (발전기반 조성)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·시범사업·세제지원·중소기업 지원·인력양성·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(안 제8조~제13조)

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등 (안 제14조~제20조)

- (신고제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, 변경신고, 휴지·폐지 신고 및 양수·합병 신고 등을 규정 (안 14조, 15조)

- (공공기관 도입·이용)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·이용에 노력하도록 함 (안 16조)
- (전산시설 등의 구비)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(안 17조)
- (인증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·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·절차 등을 규정 (안 19조, 20조)

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(안 제21조~제32조)

- (표준약관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, 표준약관의 내용 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를 규정 (안 22조)
- (사고통지) 침해사고,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(안 23조)
- (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등)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,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·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25조)
- (이용사실 공개) 업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이용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 (안 26조)
- (국외저장정보 공개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(안 27조)
- (정보 임치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보,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함 (안 29조)
- (정보의 반환·파기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가 6주전 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,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30조)
- (중단대책)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,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(안 31조)

⑤ 기타 필요사항 규정 (안 제33조~제38조)
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 협회의 설립
- 시정명령,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
- 벌칙·과태료 등 규정

○ 향후 일정(안)

-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: '12. 7 ~ 8월
- 위원회 의결 : '12. 9월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. 10월
- 법제처 심사 : '12. 11월
- 차관·국무회의 : '12. 12월

나.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
○ 국내에서 아직 활용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빅데이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'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'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(정책방안)

① 신규 서비스 발굴·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

- 방송통신, 교육, 교통,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
- 관련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서비스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매칭펀드 공모 방식으로 핵심 분야를 발굴

②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

- 대용량 데이터 수집/통합, 저장/관리, 분석, 가시화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, 분산컴퓨팅 기술, 지능화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을 중점 개발
-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범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

③ 전문인력 양성

- 빅데이터 R&D 및 시범사업 추진시 대학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석·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
- 국내 SW 전문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하여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양성
- 민간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가 자격증(Chartered Big Data Analyst)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, 기업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도 개최

④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

- 데이터 수집/저장/분석용 H/W, 데이터 수집엔진 및 분산처리 S/W 등을 갖춘 산학연 공동 활용 빅데이터 지원센터를 구축

·연구 및 활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, 시범서비스 수행,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 등 종합지원 기능 수행

- 개인정보, 기업기밀 등의 노출 없이도 원시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Open-API 형식의 개방형 정보공유(Open Data Interface) 체계 마련

⑤ 빅데이터 산업실태 조사 및 데이터지도 작성

- 국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업체, 시장 규모, 사업모델,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

-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현황, 데이터 생성주체, 주기, 유형 등을 포함한 데이터지도 작성

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

- 정보의 수집, 저장, 분석, 활용 단계별로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·기술적 장치 마련

- 일반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검증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(PIMS) 인증제 개선

⑦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

- 빅데이터의 연구·활용, 기술개발 및 표준화, 인력 양성, 정보 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도출

○ 향후 계획

-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효율적·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

다.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에 관한 사항

○ 무선랜, 블루투스 등 소출력 무선기기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'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'을 양환경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 수립

- 신속한 주파수 분배를 위해 3년 단위의 비면허 주파수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비면허 주파수 폭을 13.8GHz에서 '15년까지 20.7GHz폭으로 확대

- 주파수 분배, 기술기준,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 안내시스템을 마련하고, '생활전파 현장 자문단'을 운영('13년)

②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

- '13년부터 기업운영 멘토링, 투자설명회, 특허획득 지원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, 시제품 개발 지원 확대(연 1.2억원→7.5억원)
- 생활전파분야의 산업동향정보를 제공하고, 거래처 발굴을 위한 해외 유명 B2B, SNS 사이트용 영문블로그 제작지원을 실시('13년)

③ 생활전파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

- 4대 미래 유망분야 R&D 비중을 '15년까지 5%수준으로 확대하고,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전파의료기기('12년), TV유희대역('13년) 시범서비스 실시
-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대('13년)하고, 산업체가 필요한 지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DB를 구축

④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전파인력 양성

- 인력풀 확대를 위해 5개 특성화고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하고, 전파장학금 지원, 우수 중소기업 취업매칭, 취업 후 대학진학 연계프로그램 마련('14년)
- 구직자/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파 실무교육을 신설하고,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을 공유하는 산학협력시스템 구축('13년)

○ 소요 예산

- '12~'15년간 약 560억원 투입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합 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요자 중심의 전파정책 수립 | 5.2 | 13 | 8.5 | 9.2 | 35.9 |
|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 | 7.9 | 20.8 | 28.3 | 31.9 | 88.9 |
| 미래 성장기반 조성(R&D 포함) | 46 | 94.2 | 99.5 | 96.7 | 336.4 |
| 전파인력 양성 | - | 13 | 39.1 | 44.8 | 96.9 |
| 합 계 | 59.1 | 141 | 175.4 | 182.6 | 558.1 |

○ 향후 계획

- 생활전파분야 산업체, 전문가 간담회('12.8월)
- 비면허 주파수 3개년 확보계획 수립('12.3분기)
- R&D 인프라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('13년)

⑧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6. 28(목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5)